**(이하 “고객사”라 한다) 와 ㈜케이지이니시스(이하 “회사” 라 한다)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INIpay” : “고객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회사”가 “결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승인대행서비스’, ‘매입대행서비스’, ‘정산대행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이하 “INIpay)
	* + 1. 신용카드결제서비스 : “이용자”가 “고객사”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 지불정보가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계좌이체서비스 :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대금을 “이용자” 가 인터넷 뱅킹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실시간 입금확인 및 자동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3. 가상계좌서비스 :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대금을 “이용자”가 인터넷 가상계좌와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입금확인 및 자동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4. 휴대폰결제서비스 : “이용자”가 “고객사”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휴대폰 지불정보가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5. 상품권결제서비스 :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 및 상품권 중 “INIpay”를 통해 제공되는 지불수단
			6.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 서비스 :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에 “이용자”가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고객사”의 “쇼핑몰”에 판매하는 “상품” 결제 시 별도의 정보입력 없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는 서비스
			7. 부가서비스: 서비스 신청 시 “고객사”의 별도 신청에 따라 제공 가능한 서비스
			8. 특약서비스 : 서비스 신청 시 “고객사”가 “회사”의 계약담당자와 협의 후 별도의 특약서 체결을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
2. “결제기관” : “INIpay”를 포함한 “고객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의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승인을 하는 기관 (신용카드사, 은행, 통신과금사업자, 이동통신사, 상품권발행업자, 간편결제사 등)
3. 지불승인대행 : 지불수단의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결제기관”으로부터, 각 거래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여 “고객사”와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회사”의 업무
4. 매입대행 : 거래승인을 얻은 물품판매 및 서비스제공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회사”가 “고객사”을 대행하여 “결제기관” 등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회사”의 업무
5. 대금정산서비스 :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회사”에게 지급된 대금결제금액 중 상호 약정한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고객사”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6. 결제운영대행 :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결제CS, 관리자시스템, 기술지원, 서비스 운영지원 등 결제운영 관련 서비스
7. “이용자” : “고객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회사”의 “INIpay”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자
8. “쇼핑몰” : “고객사”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또는 사업장
9. “상품”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 “이용자”가 결제 후 배송이 수반되는 유형의 상품 및 실생활에 행위가 수반되는 모든 실물상품 및 그 외 무형의 디지털 상품
10. “접근매체”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이용자”의 공인인증서, 전화번호, 결제비밀번호, 단말기, 아이디, 비밀번호 등
11. “비정상거래” : “이용자”가 “쇼핑몰”에서 제3자의 분실, 도난, 허위발급, 도용, 위조, 변조된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와, “이용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신용카드 및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 및 배송사고가 발생한 거래
12. 전자금융거래정보(이하 “거래정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에 따른 “이용자”의 인적 사항, 계좌, “접근매체” 등(배송장, 수령증 포함)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13. 본인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책임: “이용자”가 “쇼핑몰”에서 결제에 사용한 결제수단이 진정한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소지자 본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공되어 거래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책임

**제2장 INIpay 서비스 이용조건**

**제 3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KG이니시스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사”가 본 계약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회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용신청(청약)을 하면, “회사”가 해당 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2. 타인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로 본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고객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부담한다.
3. “고객사”와 “회사”는 “수수료”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상호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 추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고객사”는 “지급대행 서비스”, “문자 서비스”, “자동결제(빌링) 서비스”, “해외카드 서비스”, “글로벌 결제 서비스” 등 “회사”가 지정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 계약 성립 후 “회사”와 별도 특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4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유보 및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사”의 이용신청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고객사”가 다음 각 호의 이용신청 유보사유를 완전히 해소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고객사”의 이용신청을 접수한다.
2. “고객사”의 정보(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등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오기재 된 경우
3. 제출한 “신청서” 혹은 구비서류에 기재된 대표자명과 홈페이지 상의 대표자명이 상이한 경우
4. 보증보험증권 또는 등록비, 연회비를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5. 신규 이용신청으로 접수하였으나 확인결과 사업자 또는 상호명만 변 경하여 재신청한 경우
6. 기타 “고객사”가 제출한 “신청서” 혹은 “부속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7.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8. “고객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입점 불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9. “고객사”의 명의가 실명이 아니거나, (개인비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인 “고객사”의 경우)다른 사람 혹은 (법인인 “고객사”의 경우)법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10. 고의적으로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신청하였거나, 누락한 사항이 있을 경우 혹은 허위의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
11. 관련 법령 혹은 기타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제 5 조 (등록 및 관리 수수료)**

1. “고객사”는 “INIpay” 서비스 이용을 개시하기 이전에 “INIpay” 시스템 및 “결제기관” 전산등록비용(이하 “등록 수수료”)을 “신청서”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전산등록 업무가 완료되어 “고객사”에게 이용계정이 부과된 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2. “고객사”는 최초에 “INIpay” 서비스 이용을 개시하기 이전에 “신청서”에 따라 “회사”에게 “INIpay” 관리에 대한 수수료(이하 “연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매년 재계약 전월까지 납부여야 한다. 만약 “고객사”가 “연관리비” 납부를 미납할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사”의 정산대금에서 직권으로 차감할 수 있다.
3. 제2항의 “연관리비”의 액수, 지급시기는 관리 원가 증감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고객사”에 대한 사전통지 후 변동될 수 있다.
4. “등록 수수료”및 “연관리비”는 “수수료”에 우선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고객사”의 사업자번호 변경이나 (“고객사”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변경 등 사유가 있어 신규계약으로 진행되면 “등록 수수료” 및 “연관리비”는 추가 발생된다.

**제 6 조 ( “고객사” ID 등의 관리)**

1. “회사”는 기본정책으로 “고객사”에 한 개의 ID를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 개의 ID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개의 ID를 통합 관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고객사”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추가 ID를 발급받아야 한다.
3. “고객사”는 “고객사” ID 및 비밀번호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 7 조 (판매금지·환금성 상품)**

1.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고객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금융당국 및 “결제기관”의 정책, “회사”의 정책에 위반될 경우, “INIpay”를 이용한 판매가 금지 혹은 제한 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에서 “회사”의 정책에 위반되어 “INIpay”를 이용한 판매가 금지되는 “상품”은 아래와 같다.

[판매금지 상품 목록]

|  |
| --- |
| 주류, 담배, 전자담배, 순금, 원석, 다이아몬드, 마약류, 음란물, 성인용품, 가짜명품, 대출정보제공, 경마경륜권, 경품입찰대행, 복권, 도박, 애완동물분양, 휴대폰 개통서비스, 인터넷 경매, 펜션 분양, 골프, 회원권, 스키 시즌권, 자동차 판매, 중고차 판매, 성인유료 서비스 제공, 유흥업소, 만남주선, 채팅, 폰팅, 유흥구인구직, 도수 있는 안경, 콘텍트렌즈 및 선글라스, 의약품, 게르마늄 팔찌, 게르마늄 목걸이, 모의총포, 로또번호, 생성서비스, 피규어, SNS 팔로워증가, 장례서비스, 저작권 침해 물품, 카드사 등록불가 업종, 랜덤박스(랜덤상품, 럭키박스 등) |

1. “상품”의 가치가 손쉽게 현금화 될 수 있는 아래 환금성 상품은 본 조 제1항의 “회사”의 정책에 위반되어 “INIpay”를 이용한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이다. “고객사”가 환금성 상품을 “INIpay”를 이용해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1)필수적으로 인증강화를 하고, 2)”회사”에게 사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환금성 상품 목록]

|  |
| --- |
| 상품권, 기프티콘, 포인트 충전, 게임 아이템, SMS충전, 웹하드 |

1. 본 조의 판매금지·환금성 상품 목록은 관계법령의 변경, 금융당국 및 “결제기관”의 정책 변경 혹은 “회사”의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사”에게 통지한다 위 통지는 “회사”가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http://www.inicis.com)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회사”는 “고객사”가 판매하는 환금성 상품의 배송여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이용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3. “고객사”가 본 조를 위반하여 판매금지·환금성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해당 거래 건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INIpay” 서비스를 즉각 중지 혹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 8 조 (손해담보물 제공)**

1. “고객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지급한도 금액을 이행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회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의 기간은 본 계약 기간과 동일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보험 증권 제출(갱신 포함)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INIpay"의 제공 및 정산대금의 지급을 전부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고, 지급 중지(또는 보류)된 정산대금으로 보증보험 체결(또는 갱신) 시 발생하는 “고객사”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3. “회사”는 “고객사”의 신용상태 및 거래금액의 규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보증보험대체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승인제한)**

1. “회사”는 “고객사”의 신용도, 매출유형,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빈도, 민원해결을 위한 협조성 등 “회사”의 리스크 관리, 운영 방침에 따라 “고객사”에 대하여 일, 월, 년, 지불수단 별로 승인한도 및 할부거래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2. “쇼핑몰”에서 발생한 매출이 “결제기관”으로부터 “비정상거래”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승인한도가 제한된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실 발생 부분은 “고객사”가 책임을 진다.

**제 10 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의무)**

1. “회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제반 사항과 행정기관의 행정지침을 준수한다.
2. “회사”는 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사”의 신원정보(법인명, 실명번호,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실명번호 등) 및 실제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수 있다.
3. “고객사”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받은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신청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
4.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사”에게 “INIpay’ 및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회사”는 정산대금 지급보류 조치를 취하거나, “INIpay” 서비스 중지 혹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3장 “고객사”와 “회사”의 책임과 의무**

**제 11 조 (“고객사”의 책임과 의무)**

1. “고객사”는 “이용자”가 “쇼핑몰”에서 “INIpay”를 통해 구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금이 “회사”의 명의로 청구됨을 쉽고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이용약관에 이를 규정하거나, “쇼핑몰” 결제화면이나 중요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2. “고객사”는 “이용자” 거래의 진위성 및 적법성 등 본인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3. “고객사”는 “회사”의 “INIpay”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고객사”는 “INIpay”를 이용한 “이용자”의 신용카드 등 지불정보를 결제승인 이후에는 별도로 보유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기결제(빌링) 등을 위하여 부득이 “이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고객사”는 “INIpay”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한 “INIpay”의 모든 구성요소(INIpay 모듈을 포함)는 “회사”의 소유이며 “고객사”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 제공, 타 용도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7. “INIpay”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를 목적으로 “회사”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고객사”가 임의 변경하여 해외에서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고객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8. “고객사”는 “회사”가 제공한 “INIpay”(INIpay 모듈을 포함)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임의수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9. “고객사”는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기타 관련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쇼핑몰” 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전자상거 래표준약관”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고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계법령 상 가맹점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 명의의 가맹점 명의가 사용된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법령 상 가맹점 준수사항을 “회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11. “이용자”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 시키는 행위
12. “상품” 등의 제공 없이 “회사”의 “INIpay”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13.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회사”의 “INIpay”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14.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회사”의 “INIpay”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15.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16. “회사”의 “INIpay”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17. “고객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INIpay” 서비스를 이용한 매출액(또는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등 양 당사자간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사”가 “INIpay” 서비스를 이용한 매출액(또는 거래량)을 현저하게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와 사전 서면 협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거래정보의 제공)**

1. “고객사”는 “회사”의 “INI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채권환수가 가능하도록 “거래정보”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고객사”는 이를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객사”가 본 조항에 따라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손해는 “고객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2. “회사”는 “결제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고객사”의 거래정보(“회사”의 “INI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결제로서, “고객사”의 하위몰에서 발생한 거래정보를 포함한다)와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3. 본 조 제1항 혹은 제2항에 따라 “회사”의 거래정보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사”는 3영업일 이내에 해당자료를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거래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4. “고객사”는 “회사”의 “INI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거래내역(“이용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구매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득한 후 “회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고객사”로 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를 “이용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5. 전 1, 2, 3항과 별도로, “회사”는 “INIpay”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의 정보(대표자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고객사”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이에 동의한다.

**제 13 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1. “회사”는 “고객사”가 “INIpay”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쇼핑몰” 운영시스템과 “회사”의 전자지불시스템(Payment Gateway)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2. “회사”는 “INIpay”를 연중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의 정기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이전에 “고객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은 예외로 한다.
3. “고객사”가 “회사”의 INIpay 모듈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네트워크상의 해킹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손해는 “회사”가 책임 진다.
4. “INIpay” 제공 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사”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책임)**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 (채권보전이나 회수에 필요한 재판상, 재판 외 비용 포함)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수수료 및 정산, 민원 관련**

**제 15 조 (결제 수수료)**

1. “고객사”는 “INIpay” 및 별도 신청한 “특약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회사”에게 결제 수수료(이하 “수수료”)를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 “수수료”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정상 매출 건을 기준으로 “고객사”와 “회사”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고객사”의 “쇼핑몰”에서의 대금결제에 “INIpay”를 단독 이용하는 전제하에 산정한다.
4. “INIpay” 및 “특약 서비스” 관련하여 “결제기관”과 “회사”가 체결한 수수료 및 “회사”의 결제플랫폼 제공, 인증대행, 결제대행서비스 운영, 기술지원, 리스크관리대행 등 업무처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서면 또는 기타(유선, 메일 혹은 “회사”의 가맹점관리자 페이지 https://www.iniw

eb.com. 이하 “가맹점관리자 페이지”)의 통지로 본 계약에 의하여 상호 약정된 지불수단 “수수료”를 증감하거나 결제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결제기관”과 “회사”간의 지불수단별 수수료와 정산주기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련법령, 금융사정 및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2.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월 승인금액의 증감, “비정상거래”의 발생 건수 및 금액, 민원발생의 빈도수에 따라 “회사”가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6 조 (영중소 우대 수수료)**

1. 신용카드 결제에 한하여, “고객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3항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게 제15조에 의거한 “수수료”가 아니라, 반기별 매출액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산정한 우대 수수료(이하 “영중소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다.
2. “영중소 우대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3항, 동법 감독규정 제25조의 5에 의거하여, “고객사”의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원가 수수료가 반기 별로 재산정되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영중소 우대 수수료”는 “회사”의 “가맹점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회사”는 “고객사”에게 “영중소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사에게 “고객사”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고객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관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 “고객사”는 “영중소 우대 수수료” 적용과 관련하여 “회사”과 별도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등록 예정인 경우에는 최소 등록하기 3영업업일 이전에 이를 “회사”에게 알려야 한다.
5. 제15조3항은 “영중소 우대 수수료”에도 준용된다.

**제 17 조 (대금정산)**

1. “회사”는 약정된 정산주기에 따라 “INIpay”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의 지불대금(승인 금액에서 취소 금액을 차감)을 약정된 제반 수수료

를 공제한 후 “고객사”에게 지급한다.

1. 전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고객사”에게 월1회(당월 말일 정산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 총액발행 기준으로 발급, 배부한다.
2. “회사”는 거래취소 및 기타 차감 금액에 대하여 “고객사”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 “고객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3. 대금 정산방식 및 제반 수수료에 대하여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합의하여 결정하며, 결제취소시의 수수료 및 부가세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회사”의 가맹점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4. “고객사”와 “회사”는 “INIpay”로 발생한 거래 중에 정산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상호 통지 후 과오납 금액을 제 2영업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된 대금 또한 제 2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 과오납에 대하여 “고객사”와 “회사”간 이견이 상호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제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하여정산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5. “고객사”가 "INIpay"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거래 취소 건에 대하여 “회사” 는 수수료를 환불한다. 다만, 이용신청서에서 정한 지불수단 중 취소 시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음을 사전 고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고객사”가 정산대금 수령 은행계좌를 변경코자 할 때는 7일전 서면으로 통지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고객사”가 본 조항상 통지를 불확실하게 하거나, 미통지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7. “고객사” 이 “INI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산대금을 제3 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채권양도 행위는 “회사”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 “회사”는 “이용자” 민원이 해결된 후, 해당 차감금액이 “회사”의 귀책으로 귀속될 경우에는 차기 대금정산 지급액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9. “회사”가 “결제기관”의 사유로 정산대금의 입금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고객사”는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0.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등의 사유로 “고객사”가 거래단절(승인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된 경우, “회사”는 거래단절 시점까지 승인된 건의 배송완료 등 거래 완결성이 확인될 때까지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단, “고객사”가 승인된 건에 대하여 거래완료 증빙자료 등을 “회사”에게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거래의 완결성을 확인 받은 경우, “회사”는 해당 정산대금을 신속히 “고객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1. 대금의 정산은 “고객사”의 월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금액이 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손해담보물의 제공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2.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은, 해당 금액이 0원을 초과될 경우에만 지급되며, 정산결과 마이너스(-) 금액인 경우에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한 후 지급된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게 차감 사유 및 내역을 고지한다.

**제 18 조 (비정상거래의 처리)**

1. “회사”의 “INI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사”의 거래 가운데 “고객사”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용자”의 “비정상거래”에 대하여 “고객사”는 “회사” 또는 “결제기관”으로부터 서면이나 e-mail 또는 유선으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정보를 요청일로부터 제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사” ”또는 “결제기관”에서 “비정상거래”로 확인된 해당 거래내역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경우 “고객사”는 즉시 취소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고객사”의 처리가 7일 동안 지연될 경우 제19조3항에 따라 처리한다.
3. “고객사”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비정상거래”로 인하여 “결제기관”에서 “회사”의 정산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조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된다고 “회사”가 판단할 경우, “회사”는 “고객사”의 정산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부족할 경우 “고객사”는 “회사”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손실 금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사”의 지급보류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고객사”에 대한 지급보류 조치는 “INIpay”의 중지 또는 “본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적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5. “고객사”의 “쇼핑몰”에 대해 “비정상거래”의 발생이 완전히 근절 되었으며, “회사”의 예상 손실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는 “회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6. “고객사”가 “회사”에게 지급보류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이행지급보증보

험, 근저당, 예금질권 등 포함)를 추가 제공한 경우 추가제공

1. 최장 할부 매출이 발생한 건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용자”의 할부항변, “결제기관”의 거래취소, 차감,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2. 기타 “고객사”와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

료된 경우.

1. “비정상거래” 등을 포함한 “이용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고,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고객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가 분실, 도난, 위조 및 변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제 19 조 (거래취소 및 환불)**

1. “고객사”는 “회사”의 “INI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용자”와의 거래에 대해 “이용자” 또는 “회사”가 관련법령이나 “결제기관”의 규정, 혹은 “비정상거래” 등을 이유로 정당하게 취소를 요구할 시에는, 해당 거래의 취소 및 대금의 환불 또는 상환의 책임이 있다.
2. “고객사”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 최대 1년 (단, 신용카드사의 거래취소 정책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범위 내에서 거래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지불수단에 대해서도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 내에 거래취소 요청이 가능하다.

1. “고객사”가 본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또는 “회사”의 취소요청에 대하여 7 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결제기관” 혹은 “회사”는 “이용자”의 취소 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사”에게 통지할 수 있다.
2. 본 조 제3항에 의해 “결제기관” 또는 “회사”가 직접 취소 처리한 거래 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대금을 환불하고, 해당 건에 대해 제17조3항에 따라 정산한다.
3. 취소요청 된 거래 건에 대한 대금이 “고객사”와 “회사” 사이에 기 정산된 경우, “회사”는 우선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대금을 환불하고, “고객사”의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대금과 “결제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차감하며, 차감할 금액이 없을 경우 “회사”는 취소매입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이 해지된 후라도 해당 금액을 “고객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고객사”는 “이용자”로부터 거래취소 요청이 접수된 경우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한 결제수단의 취소 방식으로 환급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제 20 조 (민원의 처리)**

1. “고객사”는 “INIpay”이용 중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고객사”의 책임하에 제반 문제를 성실히 해결 하여야 하며 “회사”는 문제해결 노력에 최대한 협조한다.
2. “고객사”와 “회사”는 일방이 “결제기관”의 이의신청 혹은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민원 발생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관련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영업일 이내에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제공 및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고객사”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이용자” 민원 가운데 “비정상거래” 및 거래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하자 등 포함)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고객사”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고객사”가 “본계약”을 해지한 이후라도 “회사”는 “고객사”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고객사”는 “회사”가 지정한 은행 입금계좌로 즉시 입금해야 한다.
4. “고객사”가 “이용자”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않아 “회사”의 “INIpay” 운영, 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회사”에게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통지하고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 승인 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다.

**제5장 지불 수단별 특칙**

**제 21 조 (신용카드 할부판매)**

1. “회사”의 “INI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사”의 할부 거래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회사”는 “고객사”에게 신용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월 수를 제공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고객사”가 할부판매 시 “이용자”에게 회원가입비(영업수당 제공을 통한 회원제 형태의 다단계 영업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고 민원제기 가능성이 많은 유·무형의 용역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포함)를 징구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중지 또는 할부거래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2. “고객사”는 “이용자”로부터 할부 항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2 조 (신용카드 ARS 서비스 특칙)**

1. “고객사”는 “회사”에 대한 별도 신청을 통하여, ARS전화 회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의 서비스(이하 “신용카드 AR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고객사”는 “신용카드 ARS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별도 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수수료 및 정산주기는 “신청서”에 따른다.
3. “고객사”는 제2항의 이용 수수료와 별개로 “신용카드 ARS 서비스” 운영에 있어 이용되는 SMS수수료 및 ARS운영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4. 기타 “고객사”와 “회사”는 “신용카드 ARS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5. “고객사”는 신용카드사에서 지정한 업종(여행, 꽃배달 등) 이외의

사업에 신용카드 ARS를 사용할 경우, “회사”는 이를 즉각 중단할 수

있다.

1. “회사”는 신용카드 ARS거래의 변동이 있을 시 해당 서비스 관련 화면에 전체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사”는 서비스 도중 전화회선의 장애가 발생하여 ARS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국내 신용카드 결제를 지원하며, 해외카드 및 일부 계열카드는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4. 신용카드사 정책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게 즉시 이를 통보한다.
5. “신용카드 ARS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계약의 다른 조항과 본 조항이 상충될 경우, 본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제 23 조 (은행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서비스 특칙)**

1. 실시간 계좌이체
2.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에 한하며,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3.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공하는 “INIpay”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당일 취소 외 익일 이후 취소관련 지불수단 수수료는 “고객사”의 부담으로 하고, “회사”는 이를 “고객사”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4. 무통장입금(가상계좌)
5.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의 제공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 및 우체국을 포함한다. 이는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6.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공하는 “INIpay”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할 수 없다.
7. “고객사”가 가상계좌 환불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할 경우, 본 조 2항 2호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 계좌로 환불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지불수단 수수료 및 환불 수수료는 “고객사”(또는 취소 요청 금액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한다.
8. 본 조에서 정하는 각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나 계좌이체 서비스 제공시간 또는 서비스 제공처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한한다.

**제 24 조 (휴대폰 및 전화결제 서비스 특칙)**

1. 휴대폰 또는 전화결제를 이용한 정산대금은 “이용자”가 납부한 결제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그 정산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본 계약의 제5조 내용과는 별도로 결제대금 정산 후, 익월 10영업일 이내 발행한다.
2. 본 조 1항의 정산조건과 달리 적용 할 경우 별도의 특약서를 작성한다.
3.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이미 대금 청구한 건에 대해서 “고객사”가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4. “고객사”는 “회사”와의 계약 체결 시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유형("디지털" 또는 "실물")을 명확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실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이 "디지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물" 등록을 요청하여 거래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고객사”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상기 거래로 인하여 “고객사”가 취득한 수수료의 즉시 반환 요청 또는 상계
6. 상기 거래로 발생된 모든 거래의 취소 또는 수수료의 인상(병행 가능
7. 본 조 1, 2호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본 계약 즉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제 25 조 (휴대폰 선지급 정산 서비스 특칙)**

1. “고객사”는 “이용자”에 대한 별도 신청을 통하여, “INIpay”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휴대폰 거래의 지불대금(승인대금에서 취소금액을 차감)에서 약정된 이용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이동통신사를 통해 “회사”에게 지급되기 전 “을이 자신 또는 휴대폰 중계업체의 자금으로

“고객사”에게 미리 지급하는 “회사”의 서비스(이하 “휴대폰 선정산 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1. “회사”가 “휴대폰 선정산 지급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에게 지급하는 정산대금의 주기 및 “고객사”가 “선정산 지급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용 수수료는 “신청서”에 따른다.
2. “휴대폰 선지급 정산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계약의 다른 조항과 본 조항이 상충될 경우, 본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제 26 조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 특칙)**

1. “고객사”가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거래의 당월이 지난 후 “고객사”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한 때 “고객사”을 대행하여 해당 “이용자”의 계좌로 환불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에서 “고객사”의 역할과 책임은 아래 각 호와 같다.
3. “고객사”는 “회사”에게 환불 받을 “이용자”의 환불금액,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연락받을 휴대폰 번호 등 환불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하 “환불정보”)를 “회사”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4. 본 조 제1호에 따라 “고객사”가 “회사”에게 제공한 “환불정보”가 잘못되어 “회사”가 “이용자”에게 잘못 환불한 경우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한다.
5.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고객사”의 명의로 대금이 환불됨을 고지하여야 한다.
6.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에서 “회사”의 역할과 책임은 아래 각 호와 같다.
7. “회사”는 “이용자”가 휴대폰 결제 대금 납부를 완료한 건에 대해서 “휴대폰 익월 환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8. “회사”는 “고객사”가 요청한 날의 익영업일에 ““이용자”가 요청한 결제 대금 전체를 환불한다. 단, 요청 가능 일은 “이용자”가 결제 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내로 한정한다.
9. “회사”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휴대폰 익월 환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이용자”의 민원 기타 분쟁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0. “회사”가 “고객사”에게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고객사”는 “신청서”에 따른 건당 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1.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계약의 다른 조항과 본 조항이 상충될 경우, 본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제 27 조 (상품권 서비스 특칙)**

1. “회사”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행사의 시스템 장애 등)로 상품권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상품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2. 상품권 환불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3. 기타 상품권 서비스 이용관련 제반 사항은 각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발행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한다.

**제 28 조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 서비스 특칙)**

1. “고객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및 전자지급 서비스를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 서비스의 정산주기 및 수수료는 “신청서”에 따른다.
3.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를 통하여 발생한 거래의 취소는 원 지불수단별 취소 방법과 동일하다.
4. WPAY 계좌결제를 통하여 발생한 거래의 취소 발생 시 취소수수료는 당일 취소 건이라도 “고객사”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제 29 조 (INIpay Escrow 서비스 특칙)**

1. “고객사”가 별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쇼핑몰”에서 결제한

대금을 “회사”가 예치한 후, 구매확인 된 거래에 대해서만 “고객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이하 “INIpay Escrow 서비스”)를 제공한다.

1. “INIpay Escrow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결제수단은 “신청서”에 따른다.
2. “INIpay Escrow 서비스” 관련하여 이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에 따른다.
3. 배송등록: “고객사”가 판매한 “상품”의 배송정보(택배사, 송장번호, 수신인, 수신주소, 수신인전화번호, 발신인, 발신주소, 발신전화번호)를 “회사”가 제공한 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위 및 상태
4. 배송완료 : “회사”가 “회사”와 제휴된 배송중계업체(이하 “배송중계업체”라 한다)를 통해 “고객사”의 배송상품에 대한 배송완료 정보를 수신한 상태. 또는 “고객사”가 물품을 배송등록 한 후 최대 배송일이 지난 상태
5. 구매확인 : “이용자”가 배송된 상품에 대해 “구매”의 의사를 “회사”에게 통보한 상태 또는 배송 완료 후 3 영업일 이내에 “회사”에게 구매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
6. 거래취소 : “고객사”의 요청으로 거래를 취소한 상태(단, 가상계좌는 입금이 완료되고 취소한 경우)
7. 구매거절 : “이용자”가 배송된 상품에 대해 “구매거부”의 의사를 “회사”에게 통보한 상태
8. 거절확인 : “고객사”가 “이용자”의 구매거절 의사를 수용하여 해당 거래의 승인 취소를 확정하는 행위 및 상태
9. 최대배송일 : “회사”가 “배송중계업체”를 통해 “고객사”가 배송한 물품의 배송상태 수신이 불가능한 거래에 대해서 배송완료로 추정하는 기간으로, 구체적 기간은 “신청서”에 따른다
10. “INIpay Escrow 서비스”의 정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1. “고객사”는 “INIpay”를 통해 발생된 거래에 대해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배송등록를 “회사”가 제공한 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위)을 해야 하며, 배송등록 된 거래가 구매확인이 된 건에 대해서만 정산지급이 가능하다.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송 완료되었으나 구매자의 구매확인 “을”에게 수신되지 않은 거래는 “신청서”에 따른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구매확인 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산지급 한다.
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게 배송중계업체를 통한 배송완료 상태 수신이 불가한 거래가 “이용자”의 구매확인 통보가 없을 경우, “신청서”에 따른 최대 배송일이 경과하면 배송완료로 간주하고, 정산 지급한다.
14. 전 1, 2, 3항의 정산 지급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따른다.
15. 전 1,2,3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고객사”에게 월 1회 (지급 후 익월 10일 이내) 발급, 배부한다.
16. “INIpay Escrow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소와 환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7. “고객사”는 거래 발생일로부터 원 지불수단의 취소 기한 내까지 취소를 할 수 있다(단, 네이버페이(체크아웃) 등 일부 간편결제 수단의 경우, 해당 간편결제사 정책에 따라 취소 정책 상이).
18. 전 1호과 관련, 가상계좌의 경우, 입금이 완료된 거래 중 별도 가상계좌 환불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중인 상점에 한해서 거래취소가 가능하다.
19. 거래취소 및 거절확인 건에 대해 “회사”는 해당 거래의 승인을 취소 하며, 가상계좌의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익 영업일에 환불 처리 한다.
20. 전 3호와 관련 취소 발생 시 수수료 환급방법은 원 지불수단과 동일하다.
21. “이용자”의 구매거절 된 거래건에 대해서 “고객사”는 “이용자”와의 분쟁해결 의무가 있다.
22. “회사”가 “고객사”에게 “INIpay Escrow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고객사”는 그에 대한 이용 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이용 수수료 및 정산주기는 “신청서”에 따른다.
23. “INIpay Escrow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계약의 다른 조항과 본 조항이 상충될 경우, 본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제6장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등**

**제 30 조 (계약의 기간)**

1. “고객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회사”의 “INIpay”를 이용하여야 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서면상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씩 자동 연장된다.
2. “고객사”와 “회사”는 서면을 통한 상호 합의,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가맹점관리자 페이지”에서 “고객사”의 요청과 “회사”의 승낙의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1 조 (계약의 해지)**

1. “고객사”와 “회사”는 상대방이 귀책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14영업일 간 그 시정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동안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사”와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발생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고객사”와 “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책임 및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객사” 혹은 “회사”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소송,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당사자가 본 계약상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객사” 또는 “회사”가 제3자와 합병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5. “고객사”와 “회사”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각자의 시스템을 상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6. 기타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일방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쌍방간에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된 경우
7. “고객사”가 “회사”에게 등록 요청한 사이트(홈페이지)외 제3의 사이트에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
8. 제32조 1항의 서비스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9. “고객사”는 계약해지 후 “INIpay” 이용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해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회사”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회사”는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민원발생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상호 합의가 있을 때까지 정산대금 지급 및 “고객사”가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반환을 보류할 수 있다.
11. 계약서 제17, 18, 19, 20조의 효력은 본 계약의 해지 시에도 “이용자”의 민원발생 원인 요소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12. 상호, 대표(이사), 수수료 등 변경사유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존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갱신된 계약에서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사업자번호 변경의 경우 신규계약으로 진행되어 초기 제반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13. “고객사”의 귀책으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사”는 “회사”가 “INIpay”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32 조 (서비스 중지사유)**

1.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INIpay”를 중지 할 수 있다.
2. “고객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법규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한 경우
3. “고객사”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소송,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객사”가 본 계약상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객사”가 본 계약 체결 시 판매 “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 시 등록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판매할 경우
5. “고객사”에 대한 민원이 다량으로 접수된 경우
6. “고객사”가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쇼핑몰”이 운영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7. “고객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15일 이상 결제승인 요청이 없거나, “고객사”의 거래에서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
8. 기타 “고객사”가 본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전 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회사”는 정산대금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지급보류, 승인 요청에 대한 승인제한, 승인 완료된 건에 대한 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고객사”가 “INIpay”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쇼핑몰”의 이전, 폐점, 시스템 점검 등)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사전에 “고객사”와 서면합의 하여야 하며, 서면합의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1. 일시 중지사유
12. “INIpay” 재개 예정일
13. 일시 중지기간 동안 “비정상거래”, 미해결 민원, 카드사의 차감 지급 보류 건에 대하여 “회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해결방안

**제 33 조 (계약상 지위의 승계)**

1. “고객사”에게 합병, 현물출자, 법인전환, 영업양도 등 계약상 지위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객사”는 사유발생 30일 전에 발생사유, 발생내용, 제3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본 조 1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확실한 통지를 한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본 조 1항에 의한 동의가 있거나, 통지 도달 후 7일 내에 “회사”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INIpay”를 제3자(권리의무 양수인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잔존의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은 “회사”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4. “고객사”가 “INIpay”이용기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고객사”의 “회사”에 대한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법인은 “고객사”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승계한다.

**제7장 정보보호**

**제 34 조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고객사”와 “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취득한 “이용자” 정보 및 거래정보, 상대방의 영업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귀책 사유자가 정보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장 기타**

**제 35 조 (서비스 변경사항 통지)**

1. “회사”는 INIpay”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되거나 일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웹사이트, “가맹점관리자 페이지” 등 기타 공지채널을 이용하여 공지 후 변경적용 할 수 있다.
2. “고객사”와 “회사”는 사업자정보(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및 시스템 운영 등 INIpay 이용과 관련된 변경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변경 전 제10영업일 이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발생의 귀책 사유자가 손해 배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36 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1.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 상 문구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본 계약에 우선하는 특약 또는 이용신청서 및 상관례에 따른다.
2.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거나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 및 특약, 이용신청서, 기타 관련 계약서 상 신용카드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37 조 (분쟁처리 및 관할법원)**

본 계약에 대한 분쟁발생시 “고객사”와 “회사”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은 “회사”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로 한다.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 |
| **(고객사)**  |
| 상 호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기재대표(이사) :       (법인/개인인감) |
|
|

|  |
| --- |
| **(회사)** |
| 상 호 명 :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
| 주 소 :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14, 15층 |
| 대표이사 이 선 재 (인) |

**※ 개인사업자인 공동대표 경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동대표 인원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인감 후 각자 보관 하시기 바립니다.**

**※ 법인/개인 사업자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요망**

※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감 날인 / 법인사업자: 법인 인감 날인

※ 공동대표: 위임장 제출필수

공동대표 전원 대표권 행사를 원하실 경우에는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